

● 제284회 ●

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

제7차 보건복지위원회

**서울특별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2018. 11. 26.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수 석 전 문 위 원

【 서 윤 기 의원 대표발의 】

의안번호 172

I. 조례안 개요

1. 제안자 및 제안경과

- 가. 제 안 자 : 서윤기 의원(찬성의원 16명)
- 나. 제 안 일 : 2018. 10. 17.
- 다. 회 부 일 : 2018. 10. 29.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제안이유

-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국가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권위주의 정권의 부당한 권력에 항거하여 4.19혁명, 6월 민주항쟁, 5.18 민주화운동 등에 앞장선 민주 유공자가 있어 가능하였음.
- 그러나 민주 유공자에 대한 예우과 지원은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해 희생한 공적에 비해 현저히 낮은 실정임.
- 따라서 본 개정안은 서울특별시 차원에서 민주 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강화하여 이들의 명예를 선양하고, 나라사랑 정신과 보훈의식을 고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4.19혁명 유공자, 5.18 유공자, 특수임무 유공자에 대하여 보훈예우수당 지원액 월 5만원을 월 10만원으로 개정하여 확대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제4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국가보훈기본법」,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별첨

다. 기 타 : 신·구조문 대비표(별첨)

II. 검토의견 (수석전문위원 정창훈)

1 개정안의 취지

- 본 개정조례안은 4·19혁명, 6월 민주항쟁, 5·18 민주화운동 등에 앞장선 민주유공자가 있어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국가로 성장할 수 있었기에 민주 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정당한 평가와 합당한 예우를 실시하는 차원에서 최소한도의 보상을 지원하기 위해 서울시에 거주하는 민주유공자에게 지급하고 있는 보훈예우수당(현재 월 5만원)을 상향 조정(개정 후 월 10만원)하기 위해 조례상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음.

2 주요사항 검토

- 민주유공자에 대한 보훈예우수당 지원액 확대(안 제7조제4항)
 -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국가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권위주의 정권의 부당한 권력에 항거하여 4·19혁명, 6월민주항쟁, 5·18민주화 운동 등에 앞장 선 민주유공자가 있어 가능했으나 배려와 예우는 미흡하다는 평가가 있어 왔음.
 - 서울시 해당 조례에 근거, 민주화 및 특수임무유공자에게 '17년 10월부터 보훈예우수당을 지급(월 5만원)지급해 오고 있으며, 정부(국가보훈처)가 민주·특수임무유공자를 대상으로 하는 지원이 타 유공자보다 미흡하여 수당인상을 통하여 해당 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강화가 필요함.
 - 보훈예우수당 지급대상 인원(485명)이 다른 보훈수당 인원

비해 많지 않고 인원의 변동도 거의 없어 예산 부담도 크지 않을 것을 보여짐

■ 서울시 보훈예우수당 지급 추이

○ '17~'18년 평균 지급인원

(단위 : 명/ 백만원)

구 분	예 산	연간 집행액	월평균 지급인원	전년대비인원
2017년(10~12월)	73	40	259명	
2018년(8월말 기준)	291	106	265명	6

○ 최근 대상유공자 감소 추이(市 거주 전체인원, 국가보훈처 등록)

- 4·19혁명(부상자·공로자) 및 5·18(부상자·희생자), 특수임무(부상자·공로자)

구 분(명)	'16. 8월	'17. 8월	'18. 8월
유공자 수	1,208	1,186	1,164
전년 대비	-	△22 (1.8%)	△22 (1.8%)

※ '16년 8월~'18년 8월까지 평균 감소율은 1.8%로 감소인원이 거의 없음

⇒ 2019년 비용추계에 '18년 지급대상 편성 인원(485명) 동일하게 적용

- '19~'23년 소요예산(5만원 → 10만원으로 증액시/지급대상 수 동일 적용)

(단위 : 명/ 백만원)

구 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지급인원(명)	485	485	485	485	485	485
전년대비	-	-	-	-	-	-
소요예산(백만원)	291	582	582	582	582	582
전년대비증감	-	증291	-	-	-	-

- 대상유공자 연령별 현황(전국 기준, '18.8월 국가보훈처 등록 기준)

합 계	65세 미만	65~69	70~74	75~79	80~84	85~89	90~94	95~99	100세 이상
7,088	4,782	805	512	565	282	101	28	13	-

- 동 조례안은 서울 거주 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대한 사항을 정하는 규정으로 예우수당 인상을 위해서 관련 항목을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짐

3 종합 의견

- 본 개정안은 4·19혁명, 6월 민주항쟁, 5·18 민주화 운동 등에 앞장선 민주 유공자에 대한 사회적 예우와 지원이 그들의 헌신과 희생에 비해 오랜 기간 부족했던 점에서 정당한 평가와 합당한 예우를 실시한다는 측면에서 예우와 지원강화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바, 예우수당 지급액을 상향 조정하려는 것으로 그 취지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겠음.